

[ATS 운영방안 후속조치]

'24.5월 발표한 **ATS 운영방안**의 후속조치로 **하위법령 정비**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한다.

① **ATS**의 매매체결대상 상품에 **ETF와 ETN**을 추가한다. 이와 동시에 현행 **ATS**의 매매체결대상 상품인 **주식 및 해외주식DR**과 별도로, **ETF 및 ETN**을 매매체결할 수 있는 **ATS 인가단위를 신설***한다. 즉, 조만간 출범을 앞두고 있는 **넥스트레이드**는 금번 개정을 통해 **신설되는 ETF·ETN 인가단위를 취득**한 후 **ETF·ETN**의 거래를 매매체결 할 수 있게 된다. 관련 규제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. **ATS**에서 **투자자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·ETN**을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**녹취·숙려 등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.**

* (ATS 인가단위별 자기자본 요건) 주식 200억원, ETF·ETN 100억원

② **ATS**에 대해서 **NCR 적용을 면제**하고, 자기자본 기준으로 건전성을 감독한다. **거래소**의 경우에도 **NCR이 적용되지 않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만 부과**되고 있다. **적기시정조치** 발동 기준도 이에 따라 **NCR**에서 **자기자본 기준**으로 변경된다. 현재 **ATS**의 **적기시정조치** 기준은 일반 증권사와 동일한 **경영개선권고 NCR 100%**, **경영개선요구 NCR 50%**, **경영개선명령 NCR 0%**이나, 앞으로 **경영개선권고**는 인가를 받기위한 **자기자본 요건의 100%**, **경영개선요구**는 **자기자본 요건의 85%**, **경영개선명령**은 자기자본 유지의무가 부과되는 수준과 동일한 **자기자본 요건의 70%**로 개편된다.

③ **ATS**가 **수수료를 변경**하거나 **100억원 이상의 전산설비 투자**를 할 경우 **거래소**와 동일하게 **시장효율화위원회** 심의 대상이 된다. **시장효율화위원회**는 **증권·파생상품시장의 거래비용 절감**을 위해 관련 비용을 심의하는 위원회로, 현재는 **거래소, 예탁원, 금투협, 코스콤**이 심의 대상이다. **ATS**의 수수료·

비용도 증권시장의 거래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, 출범 이후 **수수료 변경** 등이 발생할 경우 시장효율화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.

④ 한편, **펀드·신탁·일임재산**은 현재 거래소에서만 계열 증권사가 인수한 **증권**을 매수할 수 있다. ATS도 가격경쟁을 통해 매매가 체결되는 상장 시장인 만큼, 앞으로는 거래소 뿐만 아니라 **ATS를 통해서도 매수**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

※ 개정사항 중 ②NCR 면제와 ④운용 관련 규제 정비는 ATS 출범시 바로 적용